##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9376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번 호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438	김윤의원	2024.9.30.	2024.11.14.
일부개정법률안	4450	石판의전	2024.9.30.	2024.11.14.
보건의료기본법	7656	이수진의원	2025.1.20.	2025.2.18.
일부개정법률안				

나. 다음 4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소위원회 회부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235	강선우의원	2024.11.4.	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747	김미애의원	2024.12.19.	2025.1.20.
	7845	서명옥의원	2025.1.24.	2025.2.17.
	7913	안상훈의원	2025.2.5.	2025.2.17.

다.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소위원회 심사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438	김윤의원	2024.9.30.	2025.1.21.
	5235	강선우의원	2024.11.4.	2025.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747	김미애의원	2024.12.19.	2025.2.27.
	7656	이수진의원	2025.1.20.	
	7845	서명옥의원	2025.1.24.	2025.2.19. 2025.2.27.
	7913	안상훈의원	2025.2.5.	

- 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2.14.)에서 위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함.
- 마.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3.1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서 부칙 제2조를 수정한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 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와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 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 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2. 「간호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에 따른 의료기사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 2.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 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가 추천하는 전문가
-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 ①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 원이 되도록 한다.
- 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 한 사람
-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 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 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수급추계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 및 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3(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 회의 전문적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추계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사인력의 수 급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간호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 정규정의 "「간호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는 2025년 6월 20일까지 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2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기능) ①
의 사항을 심의한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u>양성 규모</u>
<u>5</u> . (생 략)	<u>6</u> . (현행 제5호와 같음)
<u>&lt;신 설&gt;</u>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
	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
	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
	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
	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
	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
	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
	<u> 여야 한다.</u>
<u>&lt;신 설&gt;</u>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보
	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
	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

- 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1.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 사·치과의사·한의사
- 2. 「간호법」제2조에 따른 간 호사
-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 사 및 한약사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 2.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 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 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지 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

- 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 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7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없을 때에는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

-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 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 천하는 전문가
-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 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 ⑦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 는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 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한 다.
- 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

   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

   를 전공한 사람
-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 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사람

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①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수급추계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예산 확보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지원하여야 한다.

①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 추계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 원회 및 제9항에 따른 분과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3조의3(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 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추계센터"라 한다)로 지전・운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